[양식 제22호]

(1)실종[2]부재)선고취소신고서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방법 € **※** 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.

(이) 대한법률구조공단

(년	철	Q.	크)	۷ شاب	21 1	× × • ×	1 ~1 1	-1-1.	
① 실종자 (잔류자)	성	명	한글	(성) /(명)			한자	(성)	/ (명)	
	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							,		
	등록기준지									
	주	소								
②재판확정일자				년	월	일	법원대	년 8		
③기타사항								·		
④신고인	성 명		② 또는 서명		주민등	주민등록번호		_		
	주 소				전화		·	이메일		
⑧제출인	<u>기</u> 성명				주민등록번.		호		_	

작 성 방 법

- ※ 이 신고는 실종(부재)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(심판)의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 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(부재선고 된 자)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③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⑧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실종(부재)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- *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2.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3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